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00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강득구 · 박홍배 · 김상욱
박지원 · 정일영 · 위성곤
최혁진 · 황운하 · 박 정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입폐기물 우수 재활용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6호), 인정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통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10조의2).

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 불가 결정을 받거나 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각각 6개월 및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라.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마. 보고·검사 대상에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하거

나 인정받은 자를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거짓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함(안 제22조의3제1항).

사.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을 받으려는 자를 수수료 대상에 추가함(안 제23조제1항).

아.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

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때에는 6년의 범위에서 정한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 유효기간,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6항”을 “제1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의2제4항”을 “제18조의2제5항”으로 한다.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제22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제23조제1항 중 “자는”을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28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
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u><신 설></u>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 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때에는 6년의 범위에서 정한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

<신 설>

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 유효기간,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생	<u>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u> <u>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u> <u>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 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u>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u> <u>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u>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현행
--	---

<신 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수출입 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

제3항 및 제4항-----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 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3. 제18조의2제6항----- ----- ----- ----- -----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4. 제18조의2제7항-----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u>환경보전</u>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 ----- --- <u>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u> 등-----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u>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② ~ ④ (생략)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기 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 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사무소·사업장 또는 「관세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 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 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가 수리된 자	<u>하는 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u>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u> <u>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u> <u>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u> <u>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u> 4. ----- ----- ----- 제5항-- ----- -----
--	--

5. (생략)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
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수
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
태에서 폐기물을 수출·수입
한 자 또는 수출·수입한 것
으로 의심되는 자

② ~ ④ (생략)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
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
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
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
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
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
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

5. (현행과 같음)

6. _____

_____ 제18조의

2제5항 _____

②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
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2.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수료) ① -----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
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
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

-----.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

2. (생략)	<u>한 자</u> 2. (현행과 같음)
---------	---------------------------